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36

발의연월일: 2022. 2. 10.

발 의 자:이학영·한준호·이해식

윤재갑 • 이동주 • 우원식

홍익표 • 이장섭 • 김경만

신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불화탄소(HFCs)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게 조정하며,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 그가 법령개정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변경

개정 법률(안)은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특정물질에 포함하고, 특정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파괴

· 판매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특정물질 정의(안 제2조제1호 및 제5호)

특정물질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은 제1종으로,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하고, 제2종 특정물질의 생산량 ·소비량 산정치 산식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지구온난화지수를 추가함.

다. 부산물로 배출되는 제2종 특정물질 파괴 노력(안 제12조제2항 신설)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 시 부산물로 생성되어 배출되 는 제2종 특정물질 파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라. 부담금 산정기준의 세부 사항 위임(안 제24조의4)

제2종 특정물질에 대한 별도 계산식 신설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담금 산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계산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부담금의 징수 방법 정비(안 제24조의5)

납부기한 다음 날에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대한 1일분의 가산금을 산출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율 한도 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인 하 조정함.

바. 과태료 상한액 정비(안 제32조)

과태료금액 지침('19.2월, 법제처)에 따른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금액

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함.

법률 제 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종 특정물질 : 오존층 파괴물질

나. 제2종 특정물질 : 수소불화탄소(HFCs)

제2조제5호 중 "오존 파괴지수를"을 "오존 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 지수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파괴확인"을 "파괴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부담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계산식은 각 특정물질이 갖는 오존 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상황
-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상황
-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상황

제24조의5제4항 중 "납부기한의"를 "그 납부기한의"로 하고, "납부일의 전날까지의"를 "납부한 날까지의"로 하며,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납처분의"를 "강제징수의"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 백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1.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 4조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9조에 따라 제조 수량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가 된 자, 제10조에 따라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에 따라 특정물질 수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 수출의 승 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및 제13조에 따라 특정물질 판매 계획 승 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각각 제4조에 따라 제1종 특정물질 제 조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9조에 따라 제1종 특정물질 제 조 수량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가 된 자, 제10조에 따라 제1종 특정물질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에 따라 제1종 특정물질 수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의2에 따라 제1종 특정물질 수출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및 제13조에 따라 제1종 특정물질 판매 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종 특정물질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에 따른 제조업의 허가를 받고, 제9조에 따른 제조 수량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2종 특정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1조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2종 특정물질을 판매하고 있는 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에 따라 판매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4.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오존층 보

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제15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 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 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 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 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 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대통 따른 다음 각 목의 물질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신 설> 가. 제1종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나. 제2종 특정물질: 수소불화 <신 설> 탄소(HFCs)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산정치"란 특정물질의 종류 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 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 --------오존 파괴지수 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또는 지구온난화지수를-----말한다.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① (생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① (현행

략)

- 1. 제12조에 따라 파괴확인을 받 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 을 제조하려는 경우
- 2. (생략)
- ② ~ ④ (생 략)

제12조(파괴확인) ① (생 략)

<신 설>

②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 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 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 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 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 클로로디플루오르메

괴	L	간	٥)
		=	\Box	,

- 1. 제12조제1항-----
-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2조(파괴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 정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 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 부담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 당 특정물질을 제조 · 판매하거 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 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공장도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 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 특 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 ×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 류별 오존 파괴지수와 징수비율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특정 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 다.

-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

 상황
-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상황
-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 기술의 개발 상황
-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① ~ ③ (생 략)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 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u>납부일</u> 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	제	1항	에 [1	다른	특건	성물?	질의	2	종
류	별	킬로	[그 달	뱀당	부두	남금.	의 7	계 :	<u>산</u>
<u>식</u> .	<u> </u>	각	특정	물	질이	갖늰	= (오 =	조
파.	괴>	지수	및	지-	구온	난화	-지	<u> 수</u>	와
다.	O □	각	호의	시	-항을	을 고	.려	<u>하</u>	혀
대.	통 i	청 령	으로	. 정	한디				

-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 상황
- 트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
 상황
-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 기술의 개발상황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left(\frac{D}{1}\right)$

(4)		
<u></u>	납부기한의	납부한
날끼	사지의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 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 한까지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u>체납처분의</u> 예에 따라 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생략)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2. (생략)

제32조(과대료) ① <u>제25조제2항에</u>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u>100</u> 문의
<u>3</u>
⑤
<u>강제징수의</u>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1
<u>제12조제1항</u>
2.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u>한다.</u>
1.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신 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1백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 3 · 4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 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 과・징수한다.

한 자

- 2.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u>300</u>만원_----

•

- 2. <삭 제>
- 3 · 4 (현행과 같음)
- ③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u>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